

[별지 제3호 서식]

[연구소 · 전담부서 · 영리연구법인] 직원현황										
1. 개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대졸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요원										
② 연구보조원										
③ 연구관리직원										
계										
2. 연구원 현황										
⑤구분	⑥연번	⑦직위	⑧성명	⑨주민등록번호	⑩소속 부서	⑪최종학교 (전공학과)	⑫최종학위 (학위번호)	⑬병적 사항	⑭발령일	⑮신규 편입여부
⑯연구소장										☐ 전임 ☐ 겸임
⑰ 연구 전 담 요 원										
⑱ 연구 보 조 원										
⑲ 연구 관 리 직 원										
상기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대표_____ (인)										

[연구소 · 전담부서 · 영리연구법인] 직원현황 작성요령

- ◇ ①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기사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에는 관련분야 자연계 전문대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도 가능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문대 졸업자에 준함)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의 수를 기입할 것(제2조제2항제1호)

☞ 학사 및 석사 주간 과정인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제5조 제3항 제1호)

☞ 대기업의 경우 기술·기능분야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전문대 졸업자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음(이 경우 “전문대졸”란은 빈칸으로 둘 것)

- ◇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전담요원중 전문대졸업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필요한 바, 연구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연구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연구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

근무기간	소속업체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 급	비 고
~					

- ◇ ⑦의 “직위”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에서 부여된 직위를 기재할 것(예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 ◇ ⑩의 “소속부서”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내의 소속부서명(예 :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기재할 것(만약,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이 세부분사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으로 기재할 것)
- ◇ ⑪의 “최종학교명” 및 ⑫의 “최종학위”란에는 최종학교명 및 최종 취득학위를 기재하되, 현재 상위학위 취득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예 : A대학 전자공학과 박사과정 1년차 등)도 기재할 것. 다만, 전문대 졸업자나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취득번호가 없으므로 학위취득번호를 기입하지 말고 졸업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것(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도 동일함)
- ◇ ⑬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특례의 종류 및 특례처분일 명시), 기타 등으로 기재할 것(여자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입할 것)
- ◇ ⑭의 “발령일”란에는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으로 발령받은 날짜를 기재할 것(회사입사일이 아님)
- ◇ ⑮의 “신규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직원에 한하여 “신규”로 기재할 것(처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말 것)
- ◇ ⑯의 “연구소장”란에는 연구소만 기재할 것
- ◇ ㉞의 “연구보조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보조하는 자를 기재할 것(연구보조원 보유는 필수요건은 아님)(제2조제2항제2호)
- ◇ ㉞의 “연구관리직원”란에는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아닌 자로서 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내에 근무하면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재할 것(연구소/전담부서/영리연구법인 업무 이외에 타부서 업무도 겸임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연구관리직원 보유는 필수요건은 아님)(제2조제2항제3호)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함